

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 주요내용

1. 제정 배경

- 금융소비자보호법령(법§16, 영§10)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시행 의무화
 - 이에, 당사는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을 마련·제정하고자 함
- 2021년9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

2. 주요 내용

- 총 9개 장(章), 39개 조(條)로 구성

제1장	총칙 (§ 1~§ 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적(§1) ○ 용어의 정의(§2) ○ 적용범위 등(§3) ○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방침(§4)
제2장	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(§ 5~§ 8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내부통제체계의 운영(§5) ○ 이사회(§6) 및 대표이사(§7)의 역할 ○ 임직원 및 조직구성(§8)
제3장	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(§ 9~§ 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(§9)과 권한(§10) ○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(§11) 및 직무(§12) ○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(§13) ○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독립성

		<p>보장(§14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(§15)
제4장	<p>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(§ 16~§ 28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직원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판매준칙(§16) ○ 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등에 관한 정책 (§17) 및 점검항목과 내부규정 수립(§18) ○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등(§19) ○ 금융상품의 판매절차 구축(§20)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(§21) ○ 광고물 제작 및 내부심의(§22) ○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(§23) ○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(§24) ○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(§25) ○ 금융소비자 신용정보, 개인정보 관리(§26) ○ 대리·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(§27) ○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(§28)
제5장	<p>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점검·조치 및 평가 (§ 29~§ 3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(§29) ○ 임직원등의 법령,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(§30)
제6장	<p>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(§ 31~§ 32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(§31) ○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격(§32)
제7장	<p>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(§33) ○ 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(§34)

	(§ 33~§ 35)	○ 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(§35)
제8장	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의 변경 절차 및 위임(§ 36)	○ 내부통제기준의 신설 · 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(§36)
제9장	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(§ 37~§ 38)	○ 고령 금융소비자(§37) 및 장애인(§38)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

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의 주요내용

기준일: 2021.10.01.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I

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항의 정보는 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.

- 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② 투자자가 예약한 증권외 총액과 증권외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

2.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II

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, 고유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항의 정보는 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.

- ①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
-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

3.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

아래 각 부분 상호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교류를 제한함.

- ① 고유재산 운용 부문
-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 부문 (신기술투자조합 및 투자일임 운용부문 등 포함)
- ③ 기타 준법감시인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

4. 정보교류차단 부문별 차단 대상정보

- ① 법 제 17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
- 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③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5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.

6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①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

- 회사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 사이의 거래
-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- 투자자문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-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-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(자전거래)
- 법규상 허용된 자전거래 중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되는 거래
-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중 특정 수익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되는 거래
-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
-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
-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거래

② 대응방안

-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.
-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,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함.
-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, 그 밖의 거래 금지.

글로벌원자산운용 주식회사